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최재란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1028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8월 14일 발 의 자:최재란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동길, 김규남, 김성준,

김영철, 남창진, 민병주, 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 박칠성, 봉양순, 송경택, 아이수루, 왕정순, 유정인, 유정희, 윤종복, 이병도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 허 훈, 홍국표 의원(26 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하여 서울시는 '전 월세종합지원센터'를 확대 및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 으며,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주택임대차 · 금융지원, 전세가격 상담,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음.
- 그러나 전 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므로, 관련 조례에 근거를 두어 해당 센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전 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함(안 제25조제1항)
- 나. 전 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무를 규정함(안 제25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주거기본법」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25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전 · 월세종합지원센터

- 제25조(전·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 행하기 위하여 전·월세종합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
 - 1.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
 - 2.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·임대차상담 지원
 - 3.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 · 주거지원 안내
 - 4.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
 - 5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
 - 6.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장 전 · 월세종합지원센터
<u><신 설></u>	제25조(전 · 월세종합지원센터의
	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주택
	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
	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
	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
	기 위하여 전 · 월세종합지원센
	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
	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	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
	무를 수행한다.
	1.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
	조정위원회 운영
	2. 주택임차인에 대한 법률・임
	대차상담 지원
	3. 주택임차인에 대한 금융ㆍ주
	거지원 안내
	4.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한
	<u>정보 제공</u>
	5.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위한
	<u>홍보자료 제작</u> 6.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
	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
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	글프이어프 현장이는 사람 등